

###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9. 6. 24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9. 6. 25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99. 7. 2) 상정 의결

#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수도행정과장 이규석)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업종별 구분표의 내용 중 가정용의 사회복지시설 범위(어린이집·놀이방 등 보육시설, 육아시설, 노인복지시설)를 구체화했으며
- 업무용의 단체명칭을 변경(원호단체→국가유공자단체)하였음
-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자립·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「안마사에관한규칙」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한 시설을 갖춘 「안마시술소」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조정(욕탕 2종→영업용)하였음.

##### 나. 주요골자

- 업종별 구분표에 있어 가정용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구체화(고아원, 양로원, 탁아소 등→어린이 집, 놀이방 등 보육시설, 육아시설, 노인복지시설)하였고, 단체명칭(원호단체→국가유공자단체) 등을 변경(안 제27조제1항 별표 제3호)
- 안마시술소 중 안마사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(연면적 830제곱미터 이하, 옥실, 발한 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제곱미터 이하) 이내에 있는 안마시술소는 영업용으로 조정하고, 안마사 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는 욕탕 2종으로 조정(안 제27조제1 항 별표 제3호)

#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놀이방 시설이 일반 상가건물에 있을 경우 건물 전체를 가정용으로 부과하는가?	○ 혼합용으로 구분하여 놀이방시설에서 사용한 양만 가정용으로 부과하며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부과함.
○ 안마시술소는 대부분 시각장애인이 고용되어	○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자립·자활 의욕 고취

<p>있으며 영업주는 일반인이 많음. 결국 영업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.</p>	<p>를 위하여 경기도의 지침에 의거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임.</p>
---	---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수정안의 요지

○ “붙임 참조”

6. 심사결과

○ 수정안 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171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7. 2

제 출 자 : 건설교통위원장

수정이유

- 안마시술소 중 안마사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(연면적 830제곱미터 이하, 욕실·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제곱미터 이하) 이내에 있는 안마시술소는 영업용으로 조정하고, 안마사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는 욕탕 2종으로 조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자립·자활 의욕을 높인다고는 하나 안마시술소의 영업주는 대부분 일반인이며 시각장애인은 대부분 고용되어 있어 결국은 영업주만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함.

□ 주요골자

○ 영업용에서

안마사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이내의 안마시술소는 삭제하여 현행대로 수정

○ 목욕탕 2종에서

안마사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(연면적 830제곱미터 이하, 욕실·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제곱미터 이하)를 초과하거나 시설규모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는 삭제하여 현행대로 수정

### 부천시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(별표 3) 업종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업종별 구분표

영 업 용	<p>①식품집객업소 ②공연장 ③숙박업(여인숙 제외) ④유기장, 노래방 ⑤백화점, 도매센터, 대규모소매점 ⑥자동차정비업, 주차장, 세차장, 주유소, 운송 또는 관광업 ⑦예식장 ⑧사설학원 ⑨사진현상소 ⑩양조업 ⑪의약품·화공약품·화장품제조업 ⑫체육시설업(체육도장업, 탁구장 제외) ⑬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(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: 입주 전까지, 운반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요율적용) ⑭별도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⑮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(최종단계요율 적용)</p> <p>⑯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</p>
목 욕 탕	<p>1종</p> <p>○ 일반 목욕장업</p> <hr/> <p>2종</p> <p>○ 특수 목욕장업</p> <p>○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</p>

#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

[수정안 포함]

###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별표 3 업종별구분표를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..

“별지”

[별표 3]

#### 업종별 구분표

업종별		구분내용
가정용(01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</li> <li>○ 담배·연탄·양곡·문방구·지물·철물 등의 소매점, 10제곱미터 미만의 복덕방, 인장업, 행정서사업, 수예점, 만화가게, 구멍가게 등</li> <li>○ 고아원, 양로원,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</li> </ul>
업무용(02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</li> <li>○ 사설소화전</li> <li>○ 관공서, 병영, 학교</li> <li>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% 이상 출자·출연한 법인 및 단체</li> <li>○ 종교단체, 방송국, 신문사, 정당, 국가유공자단체, 사회단체(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), 새마을금고, 농협, 수협, 축협, 임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</li> </ul>
영업용(03)		<p>①식품접객업소 ②공연장 ③숙박업(여인숙 제외) ④유기장, 노래방 ⑤백화점, 도매센터, 대규모소매점 ⑥자동차정비업(카센타 포함), 주차장, 세차장, 주유소(가스충전소 포함), 운송(창고보관업 포함) 또는 관광업 ⑦에식장 ⑧사설화원 ⑨사진현상소 ⑩양조업 ⑪의약품·화공약품·화장품제조업 ⑫체육시설업(체육도장업, 탁구장업 제외) ⑬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(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: 입주 전까지, 운반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요금 적용) ⑭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⑮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(최종단계요금 적용) ⑯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</p>
목욕탕	1종(04)	○ 일반 목욕장업
	2종(0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수 목욕장업</li> <li>○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</li> </ul>